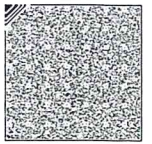




한강유역환경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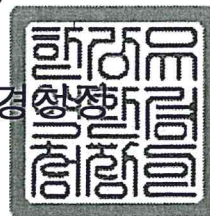
수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472개소
(경유)

제목 201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6조의2항에 따라 금년 1월 18일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·공개 제도가 시행되어,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계획*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홈페이지 게재 (<http://me.go.kr/hg>) :한강청-정보마당-부서별자료-유역계획과
3. 또한, 귀 사업장은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(<http://wems.nier.go.kr/swems> ; 5월 오픈예정)을 통해 2018.5.31까지 조사표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1부.
2.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세부계획 1부(홈페이지 게재). 끝.

한강유역환경청장



주무관	이미연	주무관	이동숙	과장	전결 2018. 3. 12. 고휘석
-----	-----	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유역계획과-959 (2018. 3. 12.) 접수

우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, (망월동)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/ <http://hg.me.go.kr>

전화번호 031-790-2445 팩스번호 031-790-2439 / lmy1001@me.go.kr / 대국민 공개

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보고

1. 배경 및 경과

- '02년부터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실시해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제도가 업체 및 지자체(감독기관) 관심 부족으로 개선 필요
 - '14년 조사결과, 대상 3,696개소 중 242개소만(7.4%) 줄이기 계획 제출, 과태료·벌칙은 전무
- 4대강 수계법 상의 줄이기 제도를 폐지하되, 「물환경보전법」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, 자발적 저감 유도
 - '17.1.17일 수질수생태계법 개정 → '18.1.18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
-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(KEI, '16.12~'17.6), 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 조사 연구(KEI, '17.9~'17.12)
 - 하위법령(안) 및 배출량 조사계획(안) 검토, 권역별 사업장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

2. 제도개요

- (근거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6조의2('18.1.18 시행)*
 - *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특정수질유해물질 취급·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함
- (대상) 배출시설 설치허가(변경허가 포함)를 받은 1~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(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 13의2)으로 배출하는 사업장
- (추진체계) 사업장조사 → 전산시스템 입력 → 검토·검증 → 공개

시기·주체	내 용
매년 3월, 환경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량 조사 계획 수립 - 대상 사업장 및 물질, 조사방법, 절차 등을 규정
매년 5월, 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량 조사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
유역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사표 항목 누락여부 등 검토(필요 시 보완 요청 및 현장 조사) ※ 미제출, 허위제출 또는 제출명령 미 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
과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량 적정산정 여부 등 검증
환경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검증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공개계획 사업장 통보 -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비공개 필요 시 15일 이내 소명 가능 ▪ 자료 공개(사업장 소명 시는 30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) - 당해 연말 또는 다음해 초 예상

3. 배출량 조사계획 주요내용

<배출량 조사>

- (대상사업장) 472개소(경기 372, 인천 73, 서울 27)
- (조사항목)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
 - 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3의 29개 물질 중 그간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
 - ※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·허가 기관 통보 예정
 -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(「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1항)
 - 금년에는 '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아크릴아미드 제외 가능
- (조사방법)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농도와 유량을 직접 측정하되, 어려울 경우 사진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허가서류 상의 수치 기재
- (조사횟수) 1~2종은 분기1회, 3종 및 1~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사설 또는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
 - '18년에는 '17년 측정자료를 제출하되 '17년 측정자료가 없을 경우는 자료 제출기한(5.31)전까지 1회 이상 측정하여 제출('19년에 '18년 측정자료로 활용 가능)
 - 관할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점검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 측정하여 통보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
- (측정지점) 원칙적으로 배출구별로 발생량(방지사설 이전)과 배출량(방지사설 이후)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
 - 공동방지사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사설로 유입되기 전(前), 배출량은 공동방지사설 후(後)
 - * 배출량 산정 시 유량은 발생량 유량, 농도는 공동방지사설 후 농도를 활용

< 처리형태별 측정지점 선정원칙 >

구분	처리형태	측정지점
1	개별처리 후 직접방류	처리시설 전·후
2	개별처리 후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	처리시설 전·후
3	원폐수를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	사업장 최종 배출구
4	원폐수(또는 개별처리 후)를 공동방지사설로 유입처리 (이후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와 무관)	공동방지사설 전·후
5	위탁처리	위탁 처리수 저장소
6	기타(1~5에 속하지 않으나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)	사업장 최종 배출구

□ (제출방법) 배출량 등을 포함한 “배출량조사표”(별지서식1)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5.31일까지 배출량 조사시스템(과학원 운영)에 입력

<조사결과 검증·공개>

□ (검토·검증) 유역청에서 조사표 항목 누락여부 등 1차 검토, 과학원은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검증(필요시 유역청과 현장 조사)

□ (공개)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시스템에 공개

- 사업장에 공개계획 통보(환경부) → 사업장은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비공개*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소명 가능(소명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공개) → 소명서에 대하여 30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후 공개

* 비공개 사유 :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,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 초래, 「부정경쟁방지법」에 따른 영업비밀

4. 향후계획

- '18. 3. 12 :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통보
- '18. 4. 12 : 사업장 대상 입력방법 등 교육* 실시
 - * 환경부 교육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- '18. 5월말까지 : 배출량조사시스템 입력 및 제출(사업장)
- '18. 6 ~ 11월 : 조사표 검토 및 검증
- '19. 2월 : 배출량 조사 공개